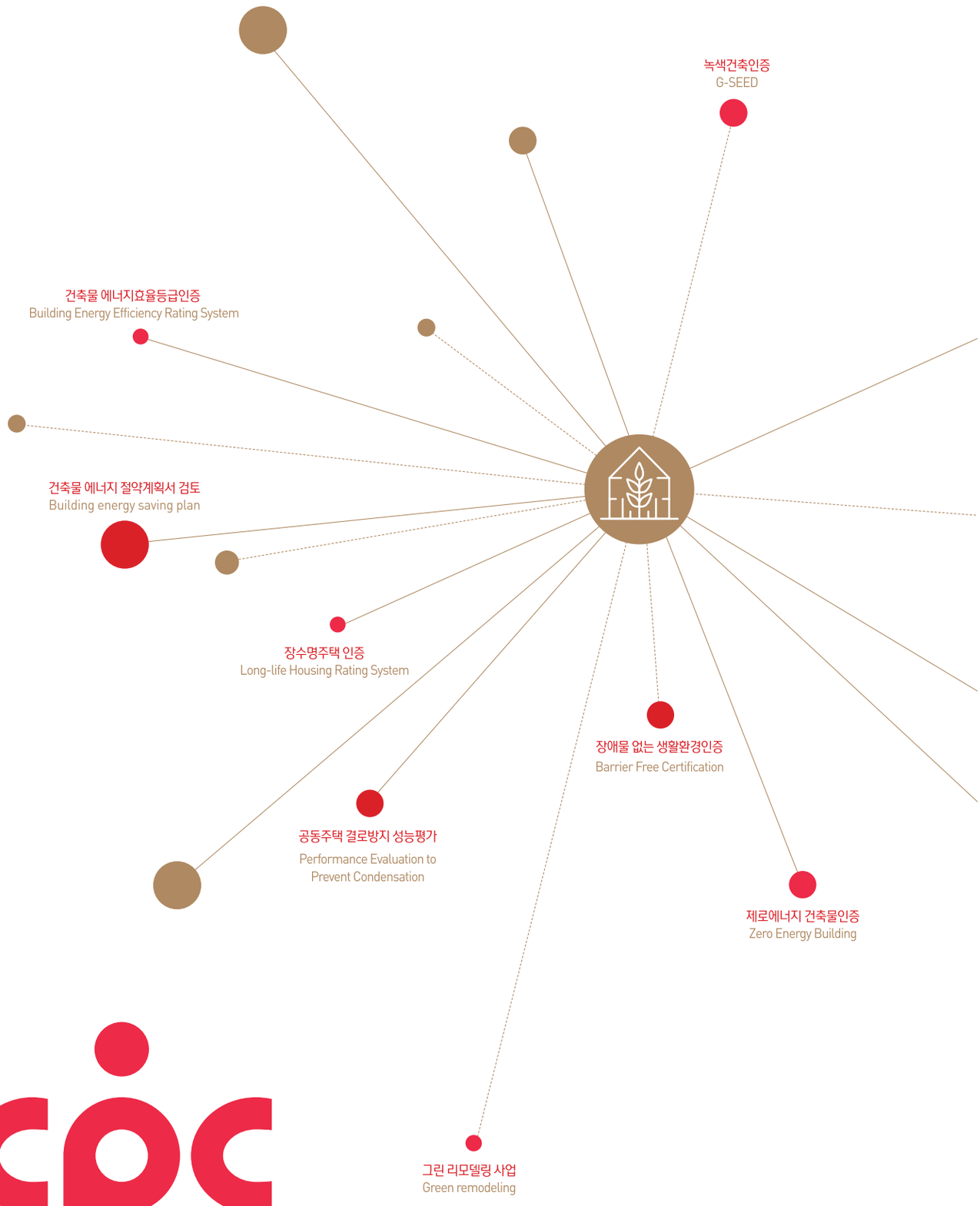
Believe the Public Trust!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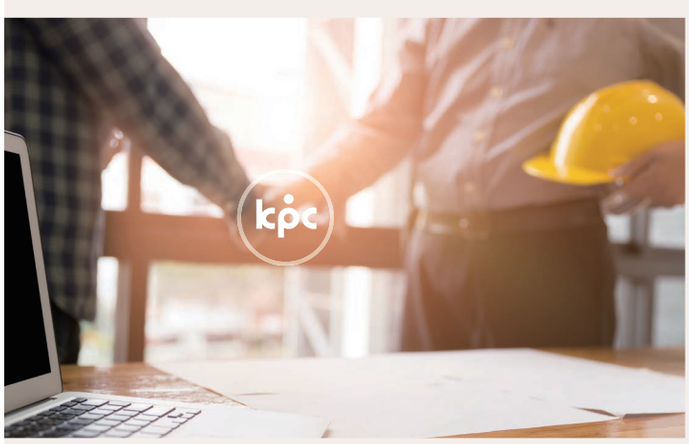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www.kpcqa.or.kr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종합 인증·평가 기관입니다.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TY
ASSURANCE

인증은 서로간의 신뢰를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와 밀접한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건축물의 친환경성, 에너지효율성, 결로방지성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에 관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기술, 성능,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증은 산업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정부, 기업, 사회의 시대흐름속에서 정부 정책의 확산자로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선도자로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설립배경

1957년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가 국내외 인증 및 평가사업을
목적으로 1994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를 산하법인으로 설립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장점

공신력, 신뢰도,
지명도 **국내 최고의 인증기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장수명 주택 인증,
그린리모델링 인증,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수행하는
종합인증기관 입니다.

● 연혁

1994. 0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QA)설립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
1997. 02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
1998. 09	독일산업협회(LGA)와 제품인증업무 협약체결
1999. 08	QS-9000(미국 자동차산업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
2000. 08	미국 ENTELA인증기관과 인증업무 협약체결
2002. 01	TL 9000(정보통신산업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 K-OHSM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
2003. 05	TS 16949(유럽/미국 자동차산업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사업개시 영국 NQA인증기관과 인증업무 협약체결
2006. 06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
2008. 06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기관) 인증 집행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2011. 03	녹색경영인증체제(GMS) 인증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품질보증조달물품 협약체결(조달청)
2011. 05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환경부)
2012. 03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2013. 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우수인증기관)
2013. 12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
2014. 0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2014. 09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2014. 12	장수명 주택 인증기관 지정
2015. 02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지정
2015. 10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2016. 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2017. 01	사무소 이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2018. 03	페어플레이어 가입(UN글로벌콤팩트)
2019. 04	REMS 검증기관 지정(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0. 0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대행기관 지정(행정안전부)

녹색건축인증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mental Design

건축물의 자재 생산 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법률 제17229호]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 녹색건축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1호]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9호]

대상 건축물

- 일반주택,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기존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 녹색건축 인증의 의무대상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 기타 의무대상 : 지자체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인증등급에 따른 심사점수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최우수 (그린1등급)	74 점 이상	80 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66 점 이상	70 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58 점 이상	60 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50 점 이상	50 점 이상

인센티브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 용적률 및 높이 완화
- 기반시설 기부체납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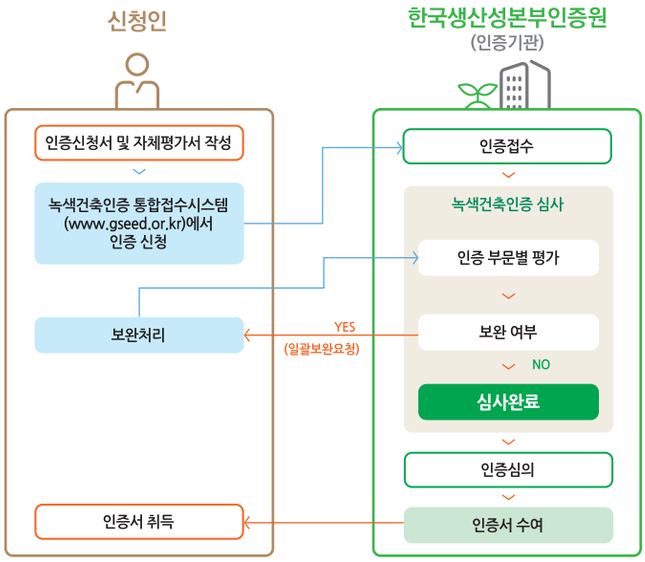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공신력있는 종합인증기관

- 다년간 경력의 전문심사원 보유
- Web기반의 ON-LINE관리 심사프로세스를 통한 개방성 강화 및 질의 문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고객지향의 조직운영

- 국민들에게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업계와 학계의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유도

업무절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을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법률 제13426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0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5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1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8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2016.03.03]

대상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주거용 이외용도 건축물(업무시설)
- 기타 냉·난방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

의무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제6항, 시행령 제12조제2항 참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 기타 의무대상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인센티브

| 취득세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재산세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완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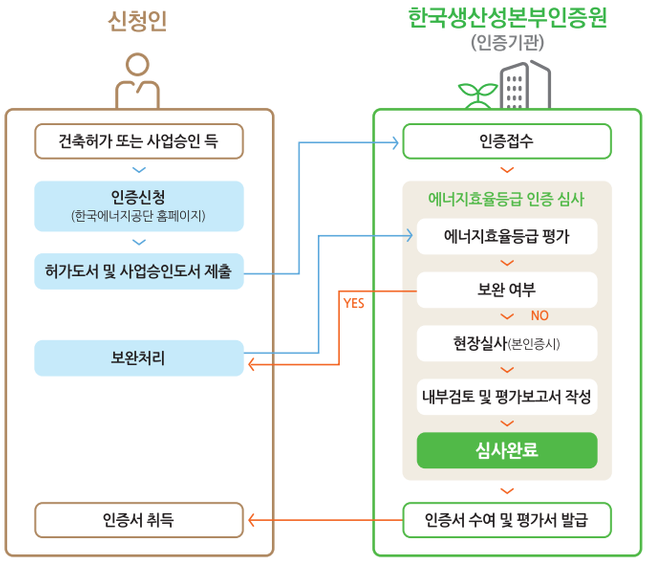
| 기반시설 기부체납 부담 경감 |
-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 에너지평가사의 검토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SYSTEM
-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 체계 구축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 검증'등 건축물에 대한 One-Stop 인증서비스를 구축한 종합 에너지 전문 인증기관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건물의 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 에너지절약기술과 관련된 주택산업의 발전을 유도

업무절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제도입니다.

Save energy, Save earth.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법률 제17229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령 제30300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국토교통부령 제682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제출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 적정성 여부 판단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취득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 취득)

제출대상 건축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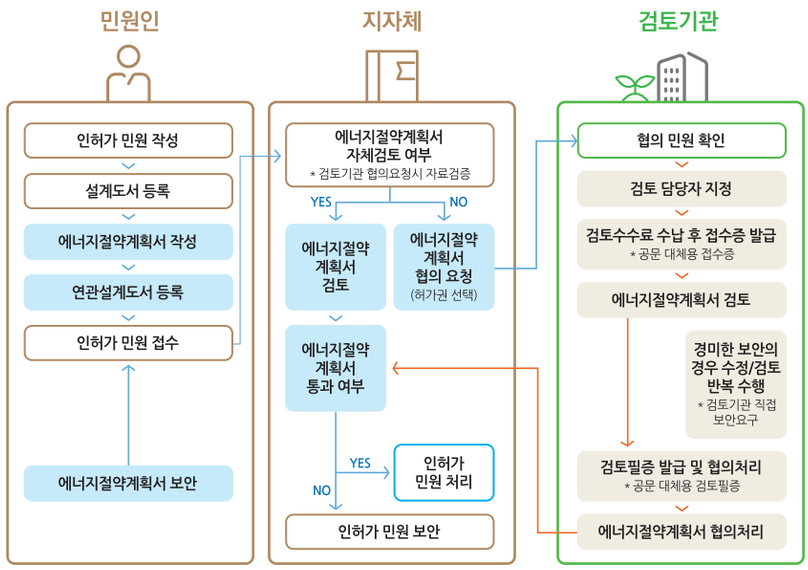
허가구분			항목			
			일반 사항	의무 사항	성능 지표서	소요량 평가서
열손실 변동	없음		○	X	X	3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증축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제출
	있음	용도변경	○	○	X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	X	
		동일동 내의 증축	○	○	X	
허가, 신고대상이 동일 대지 내에서 2동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00㎡ 미만, 개별동500 ㎡ 미만	○	○	X	
		연면적 2000㎡ 미만, 개별동500 ㎡ 이상	○	○	○	
		연면적 2000㎡ 이상	○	○	○	
그 외 모든 허가(신축포함)			○	○	○	
허가시 완화조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X	X	X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	○	X	× (등급무관)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 빠른 협의처리와 친절한 민원응대 서비스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전담팀 운영
- 온라인 Q&A를 통한 신속하고 명확한 FEED-BACK SYSTEM

범국민적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활성화

업무절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Barrier Free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의무대상 건축물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2 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함
- 개별시설 인증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대상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2021년 4월 21일 시행예정)

인증 기대 효과

| 이용자 측면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
- 인증을 통한 이용환경 개선으로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
-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생활환경 보장

| 신청자 측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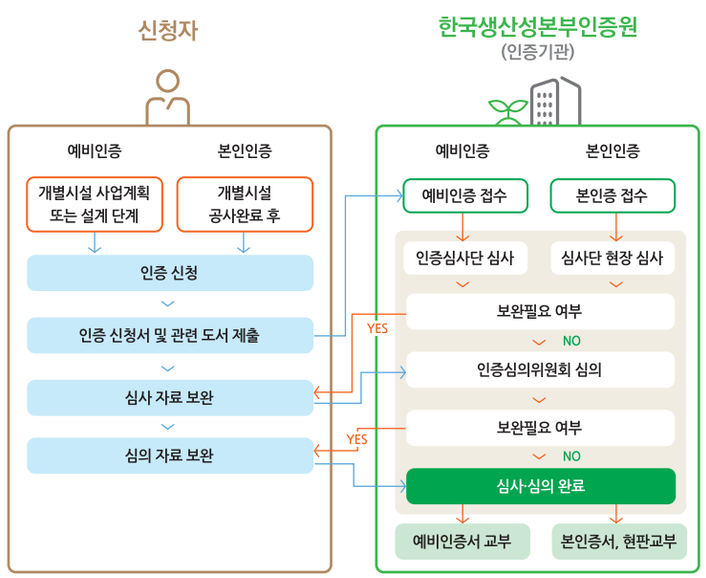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건축물의 부가가치 증대
- 인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 서비스망 구축
- 장애인 등에 대한 물리적 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 제고
- 국가·지자체와 민간이 신축하는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취득으로 공공시설 이용편의 수준 향상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 다년간의 Know-how를 가진 BF인증 전문심사원 보유
- 인증지표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
- 전화응대 및 온라인 Q&A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 시스템

- BF인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BF인증을 통한 건축물의 부가가치 증대

인증절차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Long-life Housing Rating System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은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성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보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주택법 제38조 [법률 제16870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71호]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1호]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인증등급에 따른 심사점수

등급	표시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	90점 이상	100점 만점
우 수	★★★	80점 이상	
양 호	★★	60점 이상	
일 반	★	50점 이상	

대상 건축물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
-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증 받은 내용대로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첨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인센티브

- 우수등급 이상 용적률·건폐율 완화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to Prevent Condensation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주택법 제15조 [법률 제16870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통령령 제30336호]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2014. 05]

의무대상 건축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을 허용(건축법, '05.12)함에 따라 대형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결로(물방울 맺힘, 곰팡이 발생 등) 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기준으로 제정됨

평가기준 및 방법

- 성능기준 : 주요 부위별로 기준에서 정해놓은 온도차이비율[TDR]* 이하의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함

$$\text{온도차이비율[TDR]} = \frac{\text{실내온도 -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text{실내온도 - 외기온도}}$$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 난방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 평가방법 : 기준에 적합한 조건의 시험 측정 결과 확인 또는 ISO 15099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2F
TEL. 02)6973-9065 FAX. 02)6973-9097 www.kpcqa.or.kr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